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수가는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보건소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관련법 명칭 변경(안 제3조, 제5조)
 - 의료보험법 → 국민건강보험법
 - 의료보호법 → 의료급여법
- 기타 명칭변경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 - 의료보험약가 → 국민건강보험약가
 - 의료보험 진료수가 →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
- 신설(안 제6조 제2항)
 - ②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2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3. 검토의견

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이 개정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(의료보험법 →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보호법 → 의료급여법) 관련 규정을 정비하자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

신설된 안 제6조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.

본 조례 별표2에서는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 중 진료수가를 징수하는 항목으로 2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만, 2가지(치석제거, 복합레진치료)만으로는 의료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, 또한 진료수가를 징수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열거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. 따라서 신설된 개정안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(예 : 예방접종)에 대해 진료수가를 징수할 수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